

#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7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9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3조제3항제4호는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“안전 제출 담당과장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담당 과장을 추가할 경우 실무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의 차별성 문제, 교육감 및 시장이 포함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구성의 직제상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삭제하고자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함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는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기획조정실장, <u>여성가족정책실장</u>, 교육담당 국장, <u>도시계획국장</u>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6조(회의운영) ①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되,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, <u>여성가족담당실장</u>, -----, <u>도시계획담당 본부장</u>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안전 제출 담당 과장</u></p> <p>제6조(회의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4. &lt;삭제&gt;</u></p> <p>제6조(회의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1회-----  
-----  
-----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동 조 제3항제2호 중 “여성가족 정책실장”을 “여성가족담당 실장”으로, “도시계획국장”을 “도시계획담당 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2회”를 “1회”로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는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기획조정실장, <u>여성가족정책실장</u>, 교육담당 국장, <u>도시계획국장</u>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<u>2회</u>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구성하되,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, <u>여성가족담당 실장</u>, -----, <u>도시계획담당 본부장</u>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1회</u>----- -----.</p>